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

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 이란?

○ 5인 이상 **우선지원대상기업**에서 **취업애로청년**을 **정규직**으로 **채용**하고 **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**

□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**취업애로청년**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**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** 사업주

- **취업애로청년**: 만 **15세~34세**의 4개월 이상 실업, 고졸 이하 학력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, 자립지원필요 청년, 북한이탈청년,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
- **대상기업**: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
* 단, 지식서비스 · 문화콘텐츠 · 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
□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등

□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(최대 720만원)

□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고용24누리집(www.work24.go.kr) → 상단 '기업'선택 →로그인 → 기업지원금 → 신규채용 →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→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

* 온라인 참여신청·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,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,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

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

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이란?

○ **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**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**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** 지원하고,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**최대 480만원을 지원**

□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**빈일자리 업종*** 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**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지원**

* (제조업) 고용보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제조업(C) 기업

(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) 빈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

□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(기업)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

○ (청년)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으로 도약장려금을 참여한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

☞ (근로조건 등)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등

□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(기업)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(최대 720만원)

○ (청년) 근로자가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

☞ 18개월·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

□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고용24누리집(www.work24.go.kr) → 상단 '기업'선택 →로그인 → 기업지원금 → 신규채용 →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→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